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디지털포용법시행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배경훈<br>(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법률 제20672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2조 및 제3조)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해의 시행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실태조사의 구분 등(안 제5조)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로 구분함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알리도록 함

다.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및 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 1) 국가기관등의 장이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선정하는 기준과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개별 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라. 디지털역량센터 및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 1)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디지털역량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마.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안 제16조)

-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 2)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 및 생산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 3)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차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도록 함

바.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안 27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을 기술성 평가기준과 사용성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함

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지정 절차 등(안 제31조 및 제32조)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

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2) 규제심사 전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디지털포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점검·분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분석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점검·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분석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확정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

야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의 자발적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공간 제공 사업
3.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의 파견·알선 사업
4.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대상·방법·기간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도

입·개발·구축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5. 그 밖에 국가기관등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은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3. 그 밖에 계획 및 사업 등이 디지털포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자체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선정 및 영향평가의 방법 등 자체 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 개별 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 영향평가 결과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개선권고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체 영향평가 또는 개별 영향평가 결과 해당 계획 및 사업 등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획 및 사업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이행결과

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 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10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  
른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  
역량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  
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를 신  
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  
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할 것을 알릴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거나 이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디지털역량지원센터)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개발 및 보급
2. 디지털포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의 지원
3.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의 지원
4.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조사·보급의 지원 및 연구
5.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의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7. 디지털역량센터 운영의 지원

8.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업무의 지원

9.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지원

10. 그 밖에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역량센터”는 “디지털역량지원센터”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이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제작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램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제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의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제작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관리
2. 법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보급
3.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15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2.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6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법 제1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3. 제2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기준(이하 “기술성 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2026년 1월 22일 이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2. 2026년 1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

③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 및 생산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차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여야 한다.

⑤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기술적·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사양 및 기능을 명시한 제품사양서의 제공

2.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기능의 유지·개선에 필요한 기술자료의 제공

3.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4.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5.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여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⑦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⑪ 그 밖에 보고·자료제출 및 현장검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은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2.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접근성 관련 기술 동향 및 국내외 인증 기준 조사·분석
2. 디지털취약계층 및 접근성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18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인력·설비 등의 관리·운영 절차와 방법 및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추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기관명
2. 인증기관의 대표자
3. 인증기관의 소재지
4.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 인력
5.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규정

②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1. 접근성 품질인증(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의 통계
2.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명칭과 내용
3. 접근성 품질인증의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자료
4. 접근성 품질인증 업무 관련 증빙자료
5. 제24조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자료
6. 법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에 필요한

## 자료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 인증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그 사업의 휴업·폐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는 별표 3에 따라 작성된 도안을 이용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려는 자는 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혀야 한다.

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4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1.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2.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實費)

제25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시험평가”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 시험평가결과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①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 조달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을 말한다)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로 정한다.

제27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검증기준은 기술성 평가기준(지능정보제품이 접근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과 사용성 평가기준(기술성 평가기준에 적합한 지능정보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평가의 기준을 말한다)으로 세분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9. 그 밖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28조(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인력·설비 등의 관리·운영 절차와 방법 및 시험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시험평가기관은 시험평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시험평가에 따른 수수료 받을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1. 시험평가에 투입되는 평가인력의 규모

2. 시험평가에 필요한 기간

3. 그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실비

⑤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역량센터”는 “시험평가기관”으로 본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그 밖에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와 시험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2. 지원대상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3. 공모 방법, 절차 및 일정

4.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활용성

2. 지원대상자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활용 능력

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및 사회적 여건

##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동 추진

제30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법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 활용 지원
3.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에 관한 홍보
4.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 분석, 대응체계 구축
5.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구축
6.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제31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
2.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
3.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4. 글로벌 기술·정책 동향

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  
서비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  
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  
·서비스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사업화지원 등) ①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기술·서비스 등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시설·장비 및 기술정보 이용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 연구시  
설·장비지원 및 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4. 연구개발, 사업화 및 홍보 자금 지원
5. 시제품 개발·제작 및 설비투자 비용 지원
6.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자에게 사업결과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에 따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및 대가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디지털포용 관련 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확산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사무
3. 선정 기준 및 방법
4. 위탁 신청 절차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수행인력의 전문성
2. 사업내용의 충실성
3.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
4. 사업기간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5.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4조(수출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수출진흥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
3. 수출에 필요한 판매·유통체계 등 구축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장 보칙

제35조(포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에 기여한 자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에 기여한 자
3.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개발·보급에 이바지한 자
4.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
5. 법 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그 개선 실적이 우수한 국가기관등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6. 디지털포용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자
7.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디지털포용 관련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위한 사업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강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4. 제28조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자체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시작연도가 2027년인 계획 또는 사업

제3조(경과조치) ①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보는 지능정보제품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도안은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실적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용유예에 관한 특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제조·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와 별표 5 제2호 다목 및 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1]

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입지

- 가.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이 쉬운 위치여야 한다.
- 나. 편의성: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등이 갖춰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규모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 시설의 구조 및 설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디지털역량센터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교육장 : 디지털역량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용 기자재와 냉난방, 환기, 조명 등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최소 15인석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디지털 체험존 : 교육장과는 별도로 디지털역량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충분한 실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 AI서비스 체험용 에뮬레이터 등을 구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라. 디지털 상담실 :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마트폰, AI서비스 이용 등 디지털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마. IT인프라 : 컴퓨터 또는 노트북, 태블릿 등 교육용 디지털 기기를 교육 운영에 적합하게 보유하고 초고속 인터넷 회선, 무선 인터넷(Wi-Fi)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바. 그 밖의 시설: 디지털역량센터 운영에 필요한 휴게시설, 물품 및 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4. 종사자의 수

- 가. 디지털역량센터는 시설·운영관리 업무 담당 직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 나. 운영을 위해 교육 및 강의 업무 담당 직원 2명, 디지털 상담 업무 담당 직원 2명 이상의 직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디지털 상담 업무 담당 직원 중 1명은 방문객 안내 및 전화상담 대응 업무를 해야 한다.

5. 운영

- 가. 디지털역량센터는 연중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시 야간, 주말 및 휴일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나. 디지털 상담 연결을 위한 수신전화 회선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상시 전화 연결 및 디지털역량센터 방문객 응대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동기·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법 제2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제5항제1호 | 지정취소        |             |             |
|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21조제5항제2호 | 지정취소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5항제3호 | 업무정지<br>1개월 | 업무정지<br>2개월 | 업무정지<br>3개월 |
| 라.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1조제5항제4호 | 업무정지<br>3개월 | 업무정지<br>6개월 | 지정취소        |
| 마.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 법 제21조제5항제5호 | 업무정지<br>3개월 | 업무정지<br>6개월 | 지정취소        |

[별표 3]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제22조제1항 관련)

1. 도안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도안의 크기는 웹사이트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3. 도안에는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과 인증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    | 900    | 1,500 | 2,400    |
| 나. 법 제2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                    | 법 제37조제2항제1호 | 200    | 300   | 400      |
| 다. 법 제21조 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법 제37조제2항제2호 | 200    | 300   | 400      |
| 라. 법 제22조제3항 위반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 법 제37조제2항제3호 | 200    | 300   | 400      |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 소재지 주소 |        |     |

「디지털포용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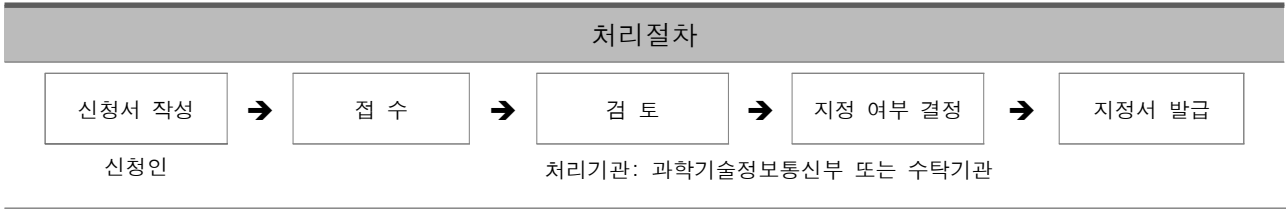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br>2.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br>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br>4. 최근 3년간의 디지털역량 활동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br>없음 |
| 담당 공무원<br>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법인등록번호: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 주소:

「디지털포용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                                                                                                                                      |                       |           |                              |                      |
|--------------------------------------------------------------------------------------------------------------------------------------|-----------------------|-----------|------------------------------|----------------------|
| <input type="checkbox"/> 웹사이트                                                                                                        |                       |           |                              |                      |
| <input type="checkbox"/>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           |                              |                      |
| <h2 style="margin: 0;">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h2>                                                                                             |                       |           |                              |                      |
| <p>※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p>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br>기간                     | 갱신 30일 이내, 신규 60일 이내 |
|                                                                                                                                      |                       |           |                              |                      |
| 신청인                                                                                                                                  | 업체(기관)명               |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
|                                                                                                                                      | 실<br>무<br>책<br>임<br>자 | 성 명       | 부 서                          | 직 위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                              |                      |
| 개발(운영)<br>업체                                                                                                                         | 업체명                   |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주소                    |           | 대표자 성명                       |                      |
|                                                                                                                                      | 담당자                   | 성 명       | 부 서                          | 직 위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                              |                      |
| 신 청<br>품 목                                                                                                                           | 웹사이트 주소 또는 소프트웨어 명칭   |           |                              |                      |
|                                                                                                                                      | 인증신청의 구분              | [    ] 최초 | 기존 인증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갱신 |                              |                      |
| 품질인증의 범위                                                                                                                             |                       |           |                              |                      |
| <p>「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p>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년      월      일</span> </div>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신 청 인</span> <span>(서명 또는 인)</span> </div>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또는 대리인)</span> <span>(전화번호:                      )</span> </div>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인증기관의 장      귀하</span> </div>                                     |                       |           |                              |                      |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

☐ 신규신청  
☐ 연장신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     |               |    |                               |        |
|-----|---------------|----|-------------------------------|--------|
| 신청인 | 업체(기관)명       |    | 대표자 성명                        |        |
|     | 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 |    | 업종형태: 제조자 [ ] 수입자 [ ] 판매자 [ ] |        |
|     | 주소            |    |                               |        |
|     | 실무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        |        |
|-----|---------------|----|--------|--------|
| 제조사 | 업체명           |    | 대표자 성명 |        |
|     | 사업자 및 법인 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실무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                  |               |
|-------------------------------------------------|------------------------------|-------------------|------------------|---------------|
| 신청<br>제품<br>(필요 시<br>별지사용<br>이 가능<br>합니다.)      | 검증 분야                        |                   | 제품명칭             |               |
|                                                 | 용도                           |                   | 검증 신청제품 처리방<br>법 | 반환 [ ] 폐기 [ ] |
|                                                 | 기본 모델명                       |                   | 파생 모델명           |               |
|                                                 | 검증 신청제품 제출                   | 시험평가 신청 제품 1식 [ ] |                  |               |
|                                                 | 접근성 기능 설명                    |                   |                  |               |
|                                                 |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                  |               |
|                                                 | 해당 제품 기능                     |                   |                  |               |
|                                                 |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                  |               |
|                                                 | 해당 제품 기능                     |                   |                  |               |
|                                                 |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                  |               |
|                                                 | 해당 제품 기능                     |                   |                  |               |
|                                                 |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                  |               |
|                                                 | 해당 제품 기능                     |                   |                  |               |
|                                                 |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                  |               |
|                                                 | 해당 제품 기능                     |                   |                  |               |
|                                                 |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                  |               |
| 해당 제품 기능                                        |                              |                   |                  |               |
|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                   |                  |               |
| 해당 제품 기능                                        |                              |                   |                  |               |
|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                   |                  |               |
| 해당 제품 기능                                        |                              |                   |                  |               |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
| 제출서류 |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br>신청인   | → | 접 수    | → |
|                 |   | 검증 수행  | → |
|                 |   | 검증서 발급 |   |
| 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

|                |  |
|----------------|--|
| 1. 등록번호        |  |
| 2. 제품명칭        |  |
| 3. 기본 모델명      |  |
| 4. 파생 모델명      |  |
| 5. 보유자(기관)     |  |
| 가. 성명(기관명)     |  |
| 나.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다. 주소(소재지)     |  |
| 6. 유효기간        |  |
| 7. 기타          |  |

위 제품은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
| 연 락 처              | (044) 202 - 6155 |